보도 해명자료

수신 : 각 언론사(편집국장, 사회부장, 경제부장)

발신 : 고용노동부 대변인(2110-7110), 근로개선정책과장(2110-7382)

제목 : 7.7 경향닷컴(7.7), 파이낸셜뉴스(7.7) **기사에 대한 해명**

○ 경향닷컴(7.7), 파이낸셜뉴스(7.7), 아이뉴스(7.7) “최저임금 순위 통계 조작됐다”, “고용노동부, OECD 최저임금 수준 통계조작”, “통계조작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수준 왜곡” 등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주요 보도내용 >

○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비현실적인 유급주휴제도를 포함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OECD 회원국 최저임금 순위를 “통계 조작했다”

○ 홍희덕의원은 고용노동부가 ‘한국은 외국에 없는 유급주휴제도가 있어 최저임금의 월 환산시 주44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에 근접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OECD는 이를 통계치에 반영, 한국의 최저임금을 2009년 기준 월 70만4000원에서 90만4000원으로, 2010년 기준 월 72만 3360원에서 92만8860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21위였던 최저임금 순위가 11위로 상승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최저임금 근로자 중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극소수라는 반론이 나온다.

○ 통계청 자료는 152만명의 시간제 근로자 중 5.2%만이 유급주휴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최저임금 시급 4320원으로 월 92만 8860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부 주장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최저임금 근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라는 지적이다.

< 해명 내용 >

○ 통계청 자료 중에 시간제근로자의 5.2%만 유급주휴제도를 받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통계자료는 없음

- 통계청 자료에서 시간제근로자의 수혜비율이 5.2%인 것은 **"유급주휴제도"**가 아니라 **"유급휴가"** 통계임

< 근로복지 수혜자 비율 >

(단위 : %, %p, 전년동월대비)

	2010. 3				2011. 3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 수당	유급 휴가	퇴직금	증감	상여금	증감	시간외 수당	증감	유급 휴가	증감
<임금근로자>	63.4	65.0	44.7	58.7	65.2	1.8	65.4	0.4	44.4	-0.3	57.2	-1.5
○ 정 규 직	76.6	79.4	55.5	70.9	77.9	1.3	79.8	0.4	54.6	-0.9	69.6	-1.3
○ 비정규직	36.8	36.0	23.0	34.0	40.2	3.4	37.3	1.3	24.3	1.3	33.0	-1.0
- 한 시 적	56.7	52.9	34.0	53.4	61.5	4.8	55.1	2.2	35.1	1.1	51.2	-2.2
.기 간 제	62.3	57.0	36.8	60.7	66.3	4.0	57.6	0.6	36.2	-0.6	55.8	-4.9
.비기간제	40.3	41.1	25.9	31.8	48.5	8.2	48.3	7.2	32.0	6.1	38.6	6.8
- 시 간 제	6.1	11.6	5.7	6.1	8.5	2.4	11.2	-0.4	6.2	0.5	**5.2**	**-0.9**
- 비 전 형	25.3	23.0	14.1	19.8	26.7	1.4	23.6	0.6	15.4	1.3	18.9	-0.9

* 통계청, 2011.3,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유급휴가"**는 **"유급주휴"**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시간급 기준의 최저임금을 월급기준의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

*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되는 휴가

* 유급주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 그간 OECD는 우리나라 월급기준 최저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률적으로 173.3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우리나라의 월급기준 최저임금이 과소평가 되어 왔음

- 이에 우리나라는 외국에 없는 유급주휴제도가 있으므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급 기준 최저임금으로 환산할 때, 1주 법정근로

시간(40시간 또는 44시간)에 유급휴일시간(8시간)을 합산하여 월급기준 최저임금을 209시간(주 40시간) 또는 226시간(주 44시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고 제기하여 이번에 수정한 것임

* 2011년도 월급기준 최저임금

.주40시간제 사업장: 902,880원= 209시간×4,320원
.주44시간제 사업장: 976,320원= 226시간×4,320원

○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통계를 조작하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순위를 조작한 바 없으며

- 오히려 홍희덕의원실에서 통계청의 “유급휴가” 통계를 “유급주휴” 통계인 것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왜곡하고 있다고 할 것임